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시 보

제1724호

2019년 6월 28일 (금)

차 례

고 시

○ 파주시 고시 제2019-167호 2019년 파주시 생활임금 고시 ····· 1

○ 파주시 고시 제2019-169호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성장관리방안(2차)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2

○ 파주시 고시 제2019-170호 도로명주소 고시 ····· 4

회 람									

발 행 : 파 주 시

파주시 고시 제2019 - 167호

2019년 파주시 생활임금 고시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파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파 주 시 장

1. 명　　칭 : 2019년 파주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3. 고시이유 :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생활임금 수준

- 시　　급 : 9,540원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의 114.13%}
- 월 급 여 : 1,993,860원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통상임금 : 기본급, 교통비, 식대,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등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적용대상

- 파주시 소속 노동자 및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제외

5. 기 타

○ 파주시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기업지원과(노사협력팀, ☎031-940-5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고시 제2019-169호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성장관리방안(2차)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1.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2. 성장관리방안(2차)의 결정을 위해 2019년 2월 28일자로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파주시 고시 제2019-51호)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개발과(031-940-470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파 주 시 장

1.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변경없음)

- 파주 운정신도시 주변 비도시지역의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수단 마련

나. 위치 (변경없음)

- 파주시 야당동 및 신촌동 일원 8개동
  (야당동, 상지석동, 신촌동, 송촌동, 연다산동, 문발동, 다율동, 오도동)

다. 면적 : 6.98㎢ (변경없음)

- 야당동일원 : 2.85㎢, 신촌동일원 : 4.13㎢

라. 성장관리방안 결정 내용 (변경) : 게재생략

마. 성장관리방안 설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성장관리방안 시행일 : 고시일

2.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수단 마련

나. 위치 및 면적

위 치	면 적(천㎡)	비 고
-	6,262	
문산읍 당동리 일원	728	성장관리지역1
탄현면 대동리, 성동리 일원	2,936	성장관리지역2
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일원	1,707	성장관리지역3
월롱면 덕은리 일원	168	성장관리지역4
조리읍 오산리 일원	151	성장관리지역5
광탄면 기산리 일원	460	성장관리지역6
동패동 일원	112	성장관리지역7

다. 성장관리방안 결정 내용 : 게재생략

라. 성장관리방안 설정도 : 게재생략

바. 성장관리방안 시행일 : 고시일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

가. 해제사유

- 당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4개월”로 고시하였으나,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 고시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함

나. 위 치

- 문산읍, 탄현면,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동패동 일원 등 7개소

다. 해제면적 : 6.268㎢

라. 해제일 : 고시일

파주시 고시 제2019-17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8.

파주시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878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940-489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